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99호, 2026. 7. 7., 공포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버스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1) 중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 회의 〈2026. 4. 30.〉”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2026. 6. 26.〉”로 한다.

제5조 중 “유가보조금”을 “① 노선버스와 택시 유가보조금”로 하고, 제1호 중 “유가보조금”을 노선버스 및 택시 유가보조금“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노선버스의 지급기간을 따른다. 다만, 경유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는 노선버스의 지급기한이 2027년 7월 16일 이후로 연장되는 경우 2027년 7월 15일까지만 지급하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정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된 경우 또는 지역별 경유 평균판매가격이 기준가격 1,500원/ℓ 이상인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지급을 개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천연가스(CNG)”를 “경유, 천연가스(CNG)”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5.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70%

제9조제3항제2호 중 “50”를 “70%”로 하고, 제5항제1호가목 중 “못한다”를 “못한다. (다만 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연동보조금의 70%”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나목 중 “못한다”를 “못한다. (다만 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연동보조금의 70%”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연동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전 2026년 7월 1일의 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유가연동보조금 1) <u>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2026. 4. 30.> 결과에 따라 경우 가격 및 천연가스(CNG)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u> 2) (생략)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유가연동보조금 1) <u>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관계장관 TF 회의 <2026. 6. 26.></u> ----- ----- ----- 2) (현행과 같음)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u>유가보조금</u> 및 유가연동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1. <u>유가보조금</u>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제3조제1호나목의1)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 2023년 7월 11일부터 <u>2026년 6월 30일까지</u> 3. 제3조제1호나목의2)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 2026년 5월 29일부터 <u>2026년 6월30일까지</u>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① <u>노선버스와 택시의 유가보조금</u> ----- ----- 1. <u>노선버스 및 택시 유가보조금</u> ----- 2. ----- ----- ----- <u>2026년 9월 30일까지</u> 3. ----- ----- ----- <u>2026년 9월 30일까지</u>
<u><신 설></u>	<u>②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및 유가</u>

	연동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노선버스의 지급기간을 따른다. 다만, 경유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는 노선버스의 지급기한이 2027년 7월 16일 이후로 연장되는 경우 2027년 7월 15일까지만 지급하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된 경우 또는 지역별 경유 평균판매가격이 기준가격 1,500원/ℓ 이상인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지급을 개시할 수 있다.
제8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생략)	제8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수소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수소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①
① (생략)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70%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유에 대	6. 제1호, 제2호 및 제5호-----

한 유류세란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의 50

④ (생략)

⑤ (생략)

1.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가. 제3조제1호나목의1)의 경우에는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70%. 다만, 183.2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제3조제1호나목의2)의 경우에는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금액(1961. 73원/ℓ)}의 70%. 다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2,100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현행과 같음)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_____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_____

_____ 못한다.

(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
연동보조금의 70%)

나. _____

_____ 못한다.

(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
연동보조금의 70%)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